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1998. 12. 1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 ('98. 12.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김 성 구

가. 개정이유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며,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하여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이용에 대하여 1년간 무료 혜택을 부여하고, 부제운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한적인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함.
(안, 별표1, 비교 제3호)
- 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부제 위반운행시의 주차요금의 할증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1, 비교 제6호)
 - 부제 운행시의 주차요금 할인혜택 확대
 - 현행 10부제 운행 준수차량의 경우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할인

→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부제운행 차량에 대하여 1회주차(시간주차)시에도 10% 할인 추가

- 부제 운행 신고차량으로서 비운행일에 운행시 제재근거 마련

- 월 정기권 이용차량 : 1회 주차요금 징수
- 1회 주차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증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동승)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함(안, 별표1, 비고 제7호)
-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안, 별표1, 비고 제10호)
- 20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1, 비고 제1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과 '98년4월20일 시달된 장애인등 동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지침 및 '98년7월7일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를 위한 협조요청등에 의하여 유류소비 억제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성실납세자, 10부제운행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등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규정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행 3급지를 4급지로, 현행 4급지를 5급지로 하고 3급지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현행 10부제운행차량은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던 것을 10부제,5부제,2부제등의 부제운행차량으로 확대하였고, 부제운행을 위반할 경우 정기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비정기권 이용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던 것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동승하였을 경우에도 할인하도록 하였고, 배기량 800cc이하의 경형자동차가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도록 신설하였고,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써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표지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신설하는등 동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동조례가 시행되므로써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 변경에 따른 주차이용 안내문을 즉시 교체설치하고 홍보등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급지를 현행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며,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하여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이용에 대하여 1년간 무료혜택을 부여하고, 부제운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한적인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함(안, 별표1, 비고 제3호)

나. 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부제 위반운행시의 주차요금의 할증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1, 비고 제6호)

(1) 부제 운행시의 주차요금 할인혜택 확대 :

- 현행 10부제 운행 준수차량의 경우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할인
→ 10부제, 5부제, 2부제등 부제운행 차량에 대하여 1회주차(시간주차)시에도 10%할인 추가

(2) 부제 운행 신고차량으로서 비운행일에 운행시 제재근거 마련 :

- 월 정기권 이용차량 : 1회 주차요금 징수
- 1회 주차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증

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동승)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
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
차요금을 면제 함(안, 별표1, 비고 제7호)

라.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안, 별표1, 비고 제10호)

마.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해서 적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1, 비고 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97.12.13법률제5453호)제8조 및 제9조,
제13조 내지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3, 4급지”를 “4, 5급지”로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2조제1항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위탁공영주차장에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별표1의 급지는 조례 시행이후 최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종전의 급지를 적용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주차 권(야간 제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 간	야 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급지	3,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50,000	100,000
2급지	1,500	500	1,000	4,000	-	-	1,500	500	180,000	60,000
3급지	1,000	300	600	3,000	-	-	1,000	300	100,000	40,000
4급지	600	200	200	2,000	50,000	-	500	200	환승목적 주차시 : 40,000 기타 : 50,000	20,000
5급지	300	100	100	1,000	30,000	20,000	3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도로·대흥로·용산선 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부제운행(차량운행일의 끝자리수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가 동일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는 10부제와 일정일에 운행하지 않는 5부제·2부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 자동차가 비운행일(10부제를 기준으로 한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증한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동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1.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1

신구조문대비표

연										개											
영										정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구분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아간 제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아간 제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1급지	3원	1원	2원	5원	-	-	2,400원	800원	25,000원	10,000원	1급지	3,0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	-	2,400원	800원	250,000원	100,000원
2급지	1,500원	500원	1,000원	4,000원	-	-	1,200원	500원	18,000원	8,000원	2급지	1,500원	500원	1,000원	4,000원	-	-	1,500원	500원	180,000원	60,000원
(단, 별)																					
3급지	600원	200원	200원	3,000원	5,000원	500원	200원	4,000원	2,000원	3급지	1,000원	300원	300원	3,000원	-	-	1,000원	300원	100,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00원	1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원	100원	3,000원	2,000원	4급지	600원	200원	200원	2,000원	50,000원	-	300원	200원	40,000원	20,000원
5급지	300원	100원	1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300원	100원	30,000원	20,000원	5급지	300원	100원	1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300원	100원	30,000원	20,000원

*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는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 비고 -

1. ~2. (생략)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생략)
나. 2급지 : 1급지·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신설>

다. 3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는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 비고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1급지 : -----
-----4급지 및 5급지

(1) (현행과 같음)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현행	개정안
<p>라. 4급지 : (1)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생략) (3) 1~3급지 주차장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p> <p>마. (생략)</p> <p>4~5.(생략)</p> <p>6. <u>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운행(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u></p>	<p>마. 5급지 : (1) 4급지----- ----- (2) (현행과 같음) (3) 1·2·3·4급지--- ----- ----- -----</p> <p>바. (현행 마와 같음)</p> <p>4~5(현행과 같음)</p> <p>6. <u>구청장은 부제운행(차량운행일의 끝자리수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가 동일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는 10부제와 일정일에 운행하지 않는 5부제·2부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 자동차가 비운행일(10부제를 기준으로 한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증한다.</u></p>

연 행	개 정 안
<p>7. <u>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u></p> <p>가. (생략)</p> <p>나. <u>국가유공자등에우등에관한법률</u>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p> <p>8.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u>4급지</u>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7. <u>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동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u> ----- ----- ----- ----- -----</p> <p>8. -----5급지----- ----- ----- ----- -----</p>

연 번	개 정 안
<p>9.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u>2, 3, 4급지</u>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p> <p><단서 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9. ----- ----- -----<u>2·3·4·5급지</u>----- ----- -----</p> <p>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u>100분의80을</u>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p> <p>10.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u>모범납세자로</u>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u>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u>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u>교부일부터 1년간</u>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1. <u>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u>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른 감면 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2. <u>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u>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